

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자료

노인학대 예방센터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 복지법 제 1조 2와 제39 조 9에 규정한 유형으로 노인을 학대 할 때에 행정적, 법적 조치를 하여 노인 권익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이외에도 상담서비스, 복지서비스, 법률서비스, 보호서비스,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노인인권 보호

1. 노인의 권리

- 가.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나.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

2. 시설생활 노인권리 선언

- 가.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나.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(care)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
- 다.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라.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 마. 우편, 전화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
- 바. 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
- 사.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- 아.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
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자. 시설 입·퇴소, 일상생활, 서비스 이용,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
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

■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지침

1.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<노인학대의 정의>

"노인학대"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(노인복지법 제39조의 9)

-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·성희롱 등의 행위
- ③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
-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
-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

3. 노인학대 유형

- 가. 신체적 학대 :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나. 언어·정서적 학대 :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
다. 성적학대 :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,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라. 재정적 학대 : 노인의 자산을 노인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

마. 방임 : 부양의무자로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바. 자기방임 :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

사. 유기 : 월별 입소비용 미납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

4.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 및 조치

가. 노인차원의 대응방안

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

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, 가족, 친지, 지인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 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

나. 가족차원의 대응방안

가족에 대해서는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

직계 가족들에 의한 노인학대는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족 간 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합니다.

다.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

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노인인권보호를 나부터 실천하고 목격시 목인 방조하여서는 안된다.

■ 노인학대 신고의무(노인복지법 제39조의6)

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,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우리 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중에 유사사례 발생시 신고하면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노인보호 전문기관 신고 전화 : 1577-1389(24시간 운영)

경기북부(의정부) 노인학대 예방센터 전화 : 821-1461

더드림재활주간보호센터 : 1566-8456



더 ~ 드림 재활 주간보호센터